

# 자성대노인복지관(센터) 운영위원회 2023년 2분기 회의록

일 시	2023. 6. 28.(수) 11:00	장 소	자성대노인복지관 2층 찻집
진 행	이은숙 관장	작 성 자	김현경(간사)
참 석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8명 중 8명 참석</li> <li>-참석자: 위원장 최** 이** 황** 박** 조** 이**, 이** 김**</li> </ul>		
주요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안건 : 2023년 3/4분기 주요 사업 계획, 복지관 운영규정 9차 개정 및 센터 운영 규정 1차 개정(안)</li> <li>○ 보고안건 : 2023년 2/4분기 사업 추진 실적, 2023년 2차 추경예산(안) 보고</li> </ul>		
회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성원보고 및 개회</b> 8명의 위원 중 8명 전원 참석으로 2023년 2분기 자성대노인복지관센터 운영위원회 성립 및 개회</li> <li>○ <b>인사말씀</b> -최**원장: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반가움과 감사인사 전함.</li> <li>○ <b>전차 회의보고</b> -2023.2.17. 진행된 2023년 1분기 운영위원회의 결과 보고.(회의자료2p)</li> <li>○ <b>보고사항</b> 1. 2/4분기 주요사업 결과보고(회의자료3p~35p) 2. 복지관 및 센터 2023년 2차 추경예산(안) 보고(회의자료51p~55p) -김**위원: 복지관 2023년 1차 추경예산 대비 42,200천원 증가한 5,551,200천원으로 편성. 센터는 봉생재가장기요양센터 폐업에 따른 사업 이관에 따라 1차 추경예산 대비 119,500천원 증가한 821,311,419원으로 편성 -이**위원: 회의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번 선풍기 지원과 양곡후원 등의 자원개발에 이**위원이 많은 도움을 주었음. 이 기회에 다시한번 감사인사를 전함. -이**위원: 복지관에 쌀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후원처 연계를 위해 수 개월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음.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함.</li> <li>○ <b>심의사항</b> 1. 2023년 3분기 주요사업 추진 계획(회의자료36p~50p) -황**위원: 자료에 보면 '우울형'이라던지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행정용어인지,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용자에게 사용하는 단어인지 궁금함. 프로그램명을 확인해 보고 이용자에게 사용하는 단어라면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또한 '혹서기'라는 용어보다는 '기후', '환경'등을 생각하는 '에너지복지'라는 개념을 적용하거나, '재난사업' 등과 같은 거시적인 용어, '인공지능'보다는 '휴먼테크놀로지' 등의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행정지침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미래 지향적인 프로그램명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위원: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직원들과 고민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3분기에는 추석명절이 있어 자원연계를 통한 취약어르신 명절 선물 지원에 주력하고자 함. 주거 복지센터 협약으로 대상선정이 원활히 진행되어 집수리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2. 복지관 제9차 운영규정 개정(안)(회의자료57p~59p) -김**위원: 2023년 사회복지법인 시설업무 가이드 반영 및 신규채용 절차 보완을 위한 인사관리 규정 내 제7조(채용절차), 제9조(채용서류) 개정, 동 지침 반영 및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복무관리 규정 내 제3조(출장), 제16조(휴가의 종류), 제18조(연차 휴가) 개정, 문서관리 규정 제23조(전결, 대결, 후결) 조항 개정 사항임. 3. 센터 제1차 운영규정 개정(안)(회의자료60p~61p) -김**위원: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변경임. 제19조</li> </ul>		

<p>회의내용</p>	<p>(서비스이용료), 제41조(근무시간), 제45조(연가일수), 제71조(퇴직금), 제87조(복지제도), 제99조(고충처리) 제100조(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p> <p>-박**위원: 타 시설에서 종사자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감독 위법사항으로 많은 비용을 연장근로 수당으로 소급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음.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운영규정 개정 시 이러한 사항을 미리 예방할 수는 없는지</p> <p>-이**위원: 동구 시설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모두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형편이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연장근로 시간은 월2시간이라 그 이상 초과근무를 해도 법인자부담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겨주기에는 한계가 있음.</p> <p>-황**위원: 복지사업을 주관하는 시 행정기관은 사실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들로 복지관을 이중구속하고 있는 형태임. 복지관 업무는 원칙에 따라 수행하고 업무량, 필요한원을 파악해 봄으로써 구에서도 이러한 복지관 사항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시에 건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p> <p>-조**위원: 연장근로수당이 월2시간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처음 인지함. 시에서 주관하고 있기에 어려움은 있지만 건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음.</p> <p>-김**위원: 노인복지관은 특히 보조금이 인건비·운영비 통합으로 지원되기에 인건비 부담이 높을수록 운영비 사업비가 없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함. 협회측에서 우선 분리를 위해 작업을 하고 있고 인건비라도 제대로 지원되었으면 함.</p> <p>-황**위원: 우리 학교의 상황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복지관은 일이 많아서 필드로 나가기를 꺼려함. 이러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청년실업 등 사회문제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근래에는 노인의 호칭도 어르신보다는 선배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연령으로 인한 편견이 부여되는 호칭보다 하나의 시민으로서의 선배시민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후배시민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생각됨.</p> <p>-이**위원: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스스로도 많이 깨우쳐야 함을 느낌.</p> <p>-최**위원장: 위의 심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함을 물음.</p> <p>-이**위원 외 전원: 동의함.</p> <p>-최**위원장: 심의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됨.</p> <p>○ 기타 논의 및 건의사항</p> <p>-이**위원: 복지관 회원들은 운영위원회가 있는지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듦. 이렇게 복지관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됨.</p> <p>-이**위원: 노인대학 시간에 기회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 대해 소개하겠음.</p> <p>○ 폐회</p> <p>-최**위원장: 더 이상 안건이 없으므로, 2023년 2분기 운영위원회 폐회를 알림.</p> <p>-이** 위원 외 전원: 동의함.</p>
<p>회의결과</p>	<p>1. 보고사항: 제출된 자료와 같이 보고받기를 동의함. 2. 심의사항: 제출된 자료와 같이 전원 동의함.</p>
<p>사 진</p>	